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추진방향 사전안내

2024년 시행 예정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추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하고 훈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2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 본 안내사항은 2024년 시행 예정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시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내용으로 향후 논의를 통해 최종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훈련기관평가

1. 기본평가

- **(평가대상기간)** 동일 처분 중복 배제를 위해 재정건전성 및 준법성에 관한 기본평가 평가대상기간을 직전연도로 조정
 - * 역량평가(훈련성과평가) 및 과정심사(성과적정성심사, 산업·지역인력수요심사)의 실적산정기간은 직전 2개연도(2022.1.1. ~ 2023.12.31.) 유지
- **(재정건전성)** 평가 실효성 강화 및 피평가자 부담경감을 위해 평가절차 정비
 - 평가기준 단순화 및 제출자료 부담 완화
 - 평가기준을 개인신용점수 또는 개인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등급으로 단순화하고, 제출자료 중 표준재무제표는 제외
 -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가 곤란한 완전자본잠식 등 재정건전성이 부실한 훈련기관에 대한 감점 기준 강화(10~15점 → 5~20점)
 - 기업회계감사 시점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발표시점을 심사평가 결과 발표일(10월)로 단일화
 - 재정건전성평가 감점에 대한 보정은 심사평가 이의신청(10월) 시 실시하며 기존 정정·보완 항목에서는 제외

- **(준법성)** 부정·부실 훈련을 방지하고, 훈련품질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유무, 제한기간 등을 반영하여 감점 기준 정비
 - 행정조치(처분) 정도, 제한기간, 부정수급액 발생 유무 등 부정·부실에 따른 행정조치 수위를 반영하여 감점 기준 강화

기존		변경(안)					
○ 계약해지(인정취소) 또는 해당직종(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구분	기본 감점	추가 감점			부정 수급
				제한기간			
부정수급액	감점		~6개월 미만	6개월 ~1년미만	1년 이상		
없음	5점	계약해지(인정취소), 해당직종(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	+3점	+6점	+2점	
100만원 미만	7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5점	+10점	+2점	
○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감점 산정 예시					
제한기간	감점	- 전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 시 기본감점 10점과 1년미만 (5점), 부정수급액(2점) 추가 감점을 합산하여 총 17점 감점					
6개월미만	10점						
1년미만	15점						
1년이상	20점						

- 부정·부실 운영으로 2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 제한(인증유예) 기준 강화*

* (기존) 3년 연속 동일항목(제재이력과 임금 관련 법위반) 5점 이상 감점 시 인증유예
 →(변경) 2년 연속 동일항목(시정명령을 제외한 제재이력과 임금 관련 법위반) 감점 시 인증유예

2. 역량평가

- **(현장평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한해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심사평가 신청 시 직접 제출
 - ※ 다만, 우수훈련기관 신규 선정을 희망(선택)하거나,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제출 시 일반 훈련기관과 동일하게 현장평가 진행 예정
- **(성과평가)** 기관단위 성과평가 편차를 고려해 성과평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저성과 기관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
 - 성과평가 지표는 직종별(NCS 소분류) 훈련실적을 기반으로 산정하고 산정한 결과를 각 배점에 따라 그대로 환산하여 적용

- 훈련규모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 성과평가를 합산하고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인증등급 부여
- 직종별 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낮은 직종(예: 하위 10%)은 훈련과정 심사와 연계·반영하여 훈련 참여 제한
- 직종별 성과평가 결과를 HRD-Net에 공개하여 훈련생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
- ※ '25년 이후 훈련성과 제고, 훈련기관 전문화, 저성과 직종의 훈련운영 제한 등을 위해 직종별 역량평가(현장평가, 성과평가) 실시 검토

3. 원격훈련기관 역량평가

- **(원격훈련과정인정요건)** 실적보유기관도 현장평가 시 신규기관과 동일하게 원격훈련과정인정요건을 검증하여 평가에 반영
- **(현장평가 항목)** 원격훈련 특성 반영 및 실제 훈련 투입 요소 검증을 위해 평가항목 정비
 - * (기존) 5개 항목(기관경영, 훈련과정관리,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훈련생관리)
→ (변경) 3개 항목(기관경영, 훈련인프라, 훈련운영관리)
- **(성과평가 지표)** 훈련기관이 창출한 훈련성과와 원격훈련 특성을 반영하도록 지표 및 배점 개선
 - **(지표조정)** 자체콘텐츠 개발·운영 지표 신설,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 지표는 삭제
 - **(배점조정)** 훈련생(재직자, 실업자) 특성에 따라 훈련과정등급, 수료율, 과정운영실적에 대한 배점을 조정
 - **(산정방식)** 수료율 등 일부 지표는 변별력 강화를 위해 상대평가 실시

4. 우수훈련기관

- **(기본요건)** 역량평가 영역별 80% 이상('23년 75% 이상) 취득 및 선정 요건 충족 시 신규 선정(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공고 시 안내)
- ※ 직업훈련 브랜드화 등을 위해 우수훈련기관 선정기준 등 지속 강화 예정

- **(선정요건)** 원격훈련기관의 우수훈련기관 신규 선정 및 취소요건에 '실적산정기간 내 자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여부' 반영
 - ※ 집체훈련기관은 훈련이수자평가 등급 보유 여부를 '23년부터 적용 중
- **(지위취소 시 유효기간)** 훈련품질관리,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훈련기관 선정 시 부여된 유효기간(5년)의 잔여기간 내에서 최대 3년(일반등급)으로 조정
 - * (기존) 지위 취소 다음연도부터 3년인증 부여 → (변경) 지위 취소 다음연도부터 기존 유효기간(5년) 내 최대 3년 부여
- **(성과협약제)** 훈련기관의 자율적인 훈련운영 보장, 훈련성과 창출 유도 등을 위한 '훈련성과협약제'를 시범 도입
 -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모니터링
 - ※ 훈련성과협약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23년 내 별도 안내 예정

2

훈련과정심사

1. 훈련과정 편성 및 심사 유연화

- **(비대면실시간훈련 인정 확대)** 훈련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대면실시간훈련 비중을 총 훈련시간의 최대 100%까지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
 - ※ 2024년 심사에서 일부 직종(정보통신, 문화콘텐츠제작 등)에 한해 시범 적용하여 훈련 성과 및 효과성 등 확인 후 적용 범위 확대
- **(훈련시간 편성 기준 완화)** 훈련대상자의 역량·수준 등에 따라 NCS 능력단위별 훈련시간을 제한 없이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
 - 단, 총 훈련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훈련과정에 편성한 NCS 능력단위별 표준훈련시간 합계의 150%까지 편성* 가능
 - * 훈련시간 편성을 유연화(NCS전공교과 표준훈련시간 합계의 150%까지 허용)하고, 훈련과정에 편성된 능력단위별 편성가능시간 제한은 해제

- **(훈련시설·장비 심사 유연화)** 우수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의 시설·장비 적정성은 해당 훈련과정의 정원 기준이 아닌 훈련내용에 부합하는 시설·장비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다만,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운영 시 회차별 훈련 실시인원에 따라 NCS훈련기준을 적용·준용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

- **(위탁·인정제한 적용 시점 조정)** 위탁·인정제한 기간 중인 직종의 훈련과정을 심사 신청한 경우도 심사 대상에 포함, 위탁·인정제한 기간 만료일에 따라 훈련과정 유효기간을 조정하여 부여

2. 국기훈련의 산업현장 인력수요 연계성 강화

- **(국기직종-KECO 연계성 강화)** “해당 분야의 특정 직업인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기훈련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수료 후 취업 분야 명시 등 훈련목표 기술 서식화

참고 국기훈련 훈련목표 기술 서식(안)

- ▶ **(훈련목표)** 해당 훈련은 “000(훈련내용)”을 배워 “00자격을 취득 또는 00직무능력을 습득”하여 “00(직종) 분야 기업”에 “00수준”의 “0000(직업)”으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작성예시)** 해당 훈련은 “인공지능 모델링”을 배워 “모델 설계 및 관리, 데이터 처리능력을 습득”하여 “인공지능 분야 기업”에 “4수준(경력 5년)”의 “데이터전문가”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인력수요 대응 국기훈련 추가 공급)** 산업현장 인력수요 및 훈련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신속하게 훈련이 공급되도록 국기훈련 추가 공급 절차 도입

기존	변경(안)
(정기) 연 1회 심사로 차년도 훈련 공급	(정기) 연 1회 심사로 차년도 훈련 공급
-	(추가) 산업수요 반영 추가 선정, 당해연도 훈련 공급(수시)

3.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훈련비 우대

- **(성과 우수 훈련과정)**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과정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고성능 훈련과정을 선별하여 훈련비 우대
- 2023년도 심사평가 결과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

고성과 기관 훈련과정(직종) 훈련비 우대(안)

대상과정	당해연도 심사평가 결과 국기훈련 인력수요 적정성 또는 실업자계좌제훈련 성과적 정성 심사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과정
훈련비	▶ 실업자국기: 직종별 지원단가의 일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훈련비 지원 ▶ 실업자계좌제: 대상과정의 훈련기관이 지원단가 상향을 선택할 경우 직종별 지원단가의 일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훈련비 지원

□ **(프로젝트 편성 국기훈련)** 프로젝트 훈련을 편성한 국기훈련과정은 프로젝트 훈련계획 적정성 여부 판단하여 훈련비 우대

- **(시범운영)** '24년도 운영과정은 '23년도 심사평가 적합 과정 중 프로젝트 훈련을 편성한 과정을 별도 공모하여 선정된 과정에 적용
- **(정규운영)** '25년 운영과정은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24년 심사평가 적합 과정 중 프로젝트 훈련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에 적용

* 2024년도 심사평가 계획 공고 시 별도 안내


프로젝트 훈련 편성 국기훈련 훈련비 우대(안)

대상과정	프로젝트 훈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한 국기훈련 과정
선정방식	기존 국기훈련과정 심사 프로세스에 더해 프로젝트 훈련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훈련비	직종별 지원단가에서 일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훈련비 지원
성과관리	프로젝트 훈련으로 인정받은 과정은 훈련이수자평가 참여 필수

3

향후 일정

□ 훈련기관 의견수렴: 2023.9.25.(월) 10:00 ~ 10.13.(금) 18:00

URL	QR코드
https://survey.ksqa.or.kr/AAAFj4	

□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2023.11월(예정)

□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설명회: 2024.4월(예정)